

[ ] 다단계판매업  
 [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의 규모		
	참고 사항 (취급품목)	[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통신기기,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후원방문판매업만 해당합니다)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4.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5.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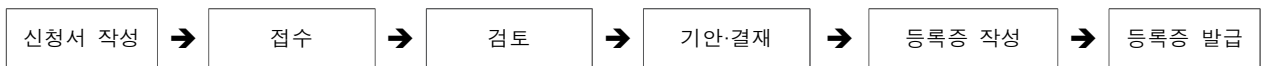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